



2021. 09. 07.(화) 10:00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 1
-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 11
-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 22
-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7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구

의안번호	3075
------	------

##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 제출일 2021. 09. 07.
- 제출자 제천시장

### [제정이유]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취업 지원 대책 수립(안 제5조)
- 우선 채용(안 제7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30. ~ 8. 19.(20일)
- 제출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하여 취업지원 대책 수립, 시행, 취업실태조사, 지방공기업 등에 우선채용 및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계 법령 >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의안번호	3076
------	------

##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 2021. 08. 27.
- 발의자 제천시장

### [개정이유]

- 현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변경
  - 현 행 :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 개정안 :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른 인용규정 개정 및 내용 수정(전부개정)

-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안 제4조)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기 간 : 2021. 07. 30. ~ 08. 1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증가, 폭염 현상 빈발 등으로 도시숲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 숲·생활 숲·가로수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사항을 변경된 신법에 맞게 현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 < 관 계 법 령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 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번호	3077
------	------

## 제천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 제 출 일 2021. 08. 27.

○ 제 출 자 제 천 시 장

### 1.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 별첨 1]
- 필 요 성 :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은 다양한 체험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험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 2. 위탁 사무의 내용

-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 당나귀·인력 등의 관리 및 위탁재산 유지·관리 등

### 3. 위탁 시설의 개요

- 위      치 : 삼한의 초록길 (제천시 청전동 395-3)
- 위탁시설 : 체험시설 (울타리, 몽골텐트 등)

### 4. 위탁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2. 12. 31.

### 5. 위탁 예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월 8,500천원
  -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계획 참조 [※ 별첨 3]

## 6. 위탁기관 선정방식

-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위탁기관 심의 위원회 구성 후 수탁자 선정
-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신청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 신청자가 없거나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단독 신청자 평가결과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가능
- 재공고를 통해서도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수탁 적격자와 수의계약 체결

## 7.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당나귀 및 체험 시설을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농·축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가진 적격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전한 체험 운영 도모
- 자체운영(직영) 시 발생하는 관리인원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 절감

## [참고사항]

{관련조례}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별첨}

-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위·수탁 계약서(안)

## [검토의견]

- 본 사무위탁 동의안은 우리 지역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삼한의 초록길의 새로운 체험 콘텐츠인 당나귀 체험 운영을 사무 위탁하는 것으로 체험 운영을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민과 외부 관광객의 유치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발췌

###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 또는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위·수탁 계약서(안)**

**2021. 9.**

**제 천 시**

##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위·수탁 계약서(안)

제천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제천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을 위해 각각 위·수탁하기로 하고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제천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체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삼한의 초록길”라 함은 제천시에서 조성한 삼한의 초록길 및 광장의 부지 및 시설을 말한다.
- ② “당나귀 체험”이라 함은 먹이주기, 산책, 당나귀를 일정 구간 타고 다니는 것 등을 말한다.
- ③ “수입금”이라 함은 수탁자에게 지원된 경비 중 인건비, 운영비 등 지출액을 제외한 경비의 잔액 및 이용료 수입을 말한다.
- ④ “수탁자”라 함은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을 말한다.

**제3조(위탁사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당나귀·인력 등의 관리 및 위탁재산 유지·관리
- ② 당나귀를 끄는 사람 및 이용객에게 안전교육 실시(주의사항 등)
- ③ 체험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등 위탁자가 지시하는 사항
- ④ 기타 삼한의 초록길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탁재산 및 인계인수) 위탁재산은 다음에 표시하는 건물(부지 포함)과 장비·물품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위탁재산의 표시】**

1. 명 칭 : 체험시설(울타리, 몽골텐트 등)
2. 위 치 : 제천시 청전동 395-3
3. 장비 및 물품 : 별도 인계인수서 작성

① 위탁자는 당나귀 체험 운영을 위하여 상기 시설 및 장비·물품 등 (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단, 위탁자가 필요시 공공목적에 위하여 시설물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시설물 등을 위·수탁 재산 및 장비(물품) 목록대로 인계하며 수탁자는 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시설물 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단, 최초 위탁 시 장비 및 물품은 별도 인계·인수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관리 재산에 대한 목록 등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이 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당나귀 체험을 운영하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며, 운영 기간은 계절 요소 등의 사유로 위탁자의 조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계약 등) ① 기존 수탁자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재계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운영비, 이용료 징수 등)** ① 위탁자는 예산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제비용을 당나귀 체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위탁자가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그 밖의 비용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당나귀 체험 운영에 관한 예산 및 회계의 투명한 관리·집행을 위하여 현금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통해 입·출금 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금 등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 전부를 위탁자가 지정한 금고에 수입금 발생 익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당나귀 체험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영조물 배상처리 될 수 있도록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수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이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피해 등은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및 기타 취득한 재산 등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도·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장비 등을 신설·확장·반입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자에게 기부채납 하거나 또는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기간·처리과정·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 명시한 사무편람(별표 1)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편람을 작성한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의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작성 및 처리한 서류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이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개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직전년도 서류를 제외한 서류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탁자에게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탁자는 모든 서류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3항의 서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멸실·훼손·분실하거나, 고의로 이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 제10조(재산관리 등)** ① 수탁자는 시설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시설물 등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대하여 시가, 감정 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른 상당액을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 및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유지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노후로(행정안전부 물품관리 지침 상 내구연수 경과) 사용불가·폐기 처분 시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조치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 등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감사)**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지도·감독·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당나귀 체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의 해지·변경)**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 관계법령, 조례 또는 계약사항 등 의무를 위반한 때
2.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3.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한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때
6. 수탁기관 임·직원이 범죄행위로 비위사실을 야기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
7. 위탁기간 만료나 위탁 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8. 기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 등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기간 동안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준용)**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해석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된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공증)** ① 수탁자는 본 계약서, 위·수탁 재산 및 장비목록(별표 2) 등이 포함된 서류에 공증을 받아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공증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은 무효로 한다.

2021년      월      일

“위탁자” 제천시(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장

이 상 천 (인)

“수탁자” ○○○법인·단체(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의안번호	3078
------	------

##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 제 출 일 2021. 08. 27.

○ 제 출 자 제 천 시 장

### 1.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촌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해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 필요
- 농촌인력증개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농작업 특화 전문화조직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인력활성화 추진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법」 제9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 추진하고자 함

### 2. 위탁 사무의 내용

구 분	내 용
기 본 방 침	○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 추진
위탁사무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인력활성화사업 등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li> <li>▶ 농업 관련 구인 · 구직 등록, 취업알선 · 연계</li> <li>▶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li> <li>▶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li> <li>▶ 농작업 참여자 차량운송 지원</li> <li>▶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li> <li>▶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li> </ul> </li> </ul>

	▶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 영 계 획	○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원칙 ○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승인
위 탁 기 간	○ 3년(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운 영 경 비	○ 508백만원 *22년 168백만원, 23년 170백만원, 24년 170백만원
시 설 사 용	○ 위 치 : 제천시 제천북로 104-12(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센터 2층, 사무실) / 건물 연면적 510m <sup>2</sup> 중 15m <sup>2</sup> ○ 이용료 : 무상임대
계 약 및 공 증	○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계약 별도 체결, 계약서 공증

### 3. 위탁 기간

- 3년(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4. 위탁 예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8백만원 (운영비 282백만원, 사업비 226백만원)
  - ▶ 매년 국비확보(공모)하여, 일하는 조직 유도 방침

#### ○ 산출기초

[단위:천원]

구 분		1인인건비/월 (4대보험 포함)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b>총 계</b>			<b>508,000</b>	<b>168,000</b>	<b>170,000</b>	<b>170,000</b>		
<b>운영경비 계</b>			<b>282,000</b>	<b>96,000</b>	<b>93,000</b>	<b>93,000</b>		
운영 경비	인건 비	센터장(1명/비상근)	200	7,200	2,400	2,400	2,400	활동비
		사무장(1명)	2,300	82,800	27,600	27,600	27,600	민간직업상담원 선임2호봉 기준
		사무원(1명)	2,100	75,600	25,200	25,200	25,200	민간직업상담원 책임2호봉 기준
		4대보험 및 초과수당	1,160	41,916	13,916	14,000	14,000	
	운영 비	운영비	2,240	74,506	26,884	23,800	23,800	자산 취득비 포함(22년)
<b>사업비 계</b>			<b>226,000</b>	<b>72,000</b>	<b>77,000</b>	<b>77,000</b>		
사업비	인력중개 및 차량운송 사업	72,000	226,000	72,000	77,000	77,000		

## 5. 수탁기관 선정방식

### ○ 수탁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 항에 해당 하는 자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경험이 있거나, 농촌인력지원 및 농촌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수탁기관 선정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후 수탁자 선정
-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신청자 중 최고득점자 선정  
※ 신청자가 없거나 평가결과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재공고를 통해서도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수탁 적격자와 수의계약 체결

## 6.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농촌인력지원 분야의 전문화 조직 운영으로 관내·외 유희인력에게 안정적 근로여건 조성하고,
- 농촌인력수급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해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제104조 3항
-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제12조, 제13조
-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별첨}

-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안)

**[검토의견]**

- 본 사무위탁 동의안은 관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이 지속 가능토록 농작업 특화 전문 조직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사무위탁을 하는 것으로,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제104조 3항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도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4조(위탁 대상사무)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공공시설물 관리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위 **수**탁

계 약 서 ( 안 )

---

제 천 시



##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2조, 「제천시 농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및 사무를 위·수탁함에 있어 제천시를 “시”라 하고, ○○○을 “수탁자”라 하고 “시”와 “수탁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가 농촌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인력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센터”운영에 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시”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무명	사무의 내용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li> <li>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li> <li>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li> <li>4.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li> <li>5. 농작업 참여자 차량운송 지원</li> <li>6.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li> <li>7.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li> <li>8.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제3조(위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을 수탁 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양도·대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⑤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사업 계획서”라 한다)를 전년도 9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 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시”가 정하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재무 회계규칙」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시”와“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정산내역을 제5조에 정한 사업 계획서와 함께“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시”가 지급한 위탁비에 대하여 반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

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농작업자 안전보험 등)에 가입하고 2022년 2월 28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 해지 시, 수탁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새로운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성과평가)** ① “시”와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시”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시”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 책임)** ①“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수탁자”의 귀책사유로“시”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함)를 즉시“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변경)**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

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수탁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수탁자”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지원센터” 운영 시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 운영하지 않거나, “지원센터”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원센터” 외 상근겸직을 할 경우
  12. 위·수탁 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개정 또는 「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1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 ②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이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해지 당시의 “시”에게 속하는 재산을 “시”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하며,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첨부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 및 이자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 ⑤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시”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와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시”와“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3부를 작성하고, “시”와 “수탁자”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년 월 일

“시”

제천시장 이 상 천 (인)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304-83-02387

“수탁자”

000000 대표 0 0 0 (인)

00 00시·군 000 000

000-00-00000

##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출일 2021. 08. 27.

○ 제출자 제천시장

### [심의안건]

○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공유재산 취득 : 3건

### [취득재산]

(단위: m<sup>2</sup>, 천원)

구분	취득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토지		건물(시설물)		공작물 수량(식)		
	필지	면적	동	면적			
계	1	19,650	4	4,592.29		7,386,231	
건설과			1	1,226.29		2,474,000	청전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
관광미식과	1	19,650				144,231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기술지원과			3	3,366		4,768,000	아열대스마트온실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검토의견]

### ① 청전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 청전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청전지하도로는 1998년 임시사용 이후 23년간 미준공시설로 방치되어 있어 그 해결 문제가 우리시의 커다란 숙원과제이었으나, 2020년 1월 제천시로 시설물이 귀속됨에 따라, 이 곳을 청소년문화시설로 탈바꿈하여 청소년의 여가환경을 개선하고자 청전동643번지 일원 지하 1층 연면적 1,226.29평방미터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24억 7,4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천시 지역 이미지 개선은 물론 청소년들의 문화 및 여가 활동 공간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취득 건은 2020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모산동 산14-4번지(신터리봉) 1필지 19,650㎡,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여 의림지와 청전뜰 등 삼한의 초록길과의 연결로, 의림지 권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도심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제천 제1명소인 의림지 권역 개발추진을 위해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③ 아열대스마트온실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 아열대스마트온실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권은 기후의 변화에 따른 제천지역의 아열대 작물의 선별·보급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원도심 체류형 관광도시 육성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봉양읍 미당리 193번지 등 2필지에 유리온실 1,980㎡, 시설하우스 990㎡, 그 외 396㎡의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47억 6,8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산성있는 농업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